

대여금고 약관

제1조 (보관대상)

- ① 보관대상에는 제한이 없다.
- ② 제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은행은 보관에 적합한 물품인지를 확인할 수 있으며, 위험물질·부패성 물질 등 보관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때는 보관을 거절할 수 있다.

제2조 (대상 고객 및 계약 기간)

- ① 본 약관에 정한 대여금고서비스는 은행이 정한 기준에 부합하는 고객에 한하여 제공한다.
- ② 대여금고의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하되 계약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계약종료 또는 계약조건 변경의 통지가 없는 한 본 계약은 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갱신된다. 다만, 계약기간 만료 30일전 은행은 고객이 제1항에 정한 기준에 부합 되는지 심사하여 연장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.

제3조 (인감·서명 등 신고)

거래처는 대여금고에 사용할 인감 또는 서명(또는 지문) 및 비밀번호를 신고해야 하며, 대리인을 통해 거래하려고 할 때는 대리인도 위의 사항을 신고해야 한다.

제4조 (열쇠 또는 카드의 보관 및 사용)

- ① 대여금고, 열쇠(카드 포함, 이하 같다)는 거래처용, 및 예비용으로 구분하여 사용한다.
- ② 예비용 열쇠는 은행 직원이 보는 데서 봉투에 넣고 거래처가 신고한 인감 또는 서명으로 봉인하여 은행(본점)에 보관한다.
- ③ 은행이 화재·천재지변, 법관이 발부한 영장 등과 금고수리, 기타 은행사정에 따라 부득이 대여금고를 열어야 할 때는 예비용 열쇠를 사용할 수 있다.

제5조 (대여금고의 이용)

- ① 대여금고를 열 때는 신고한 인감 또는 서명의 제출 및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등의 이용절차를 거친 후 거래처용 열쇠(또는 카드)를 사용한다.
- ② 거래처는 대여금고를 이용한 후 금고가 완전히 잠겼는지를 확인해야 하며, 이를 소홀히 하여 거래처에 손해가 생겨도 은행은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.

제6조 (이용시간)

대여금고는 은행의 영업시간 안에 이용할 수 있다.

제7조 (보관물품의 임의처분 등)

- ① 제9조에 정한 사유 등으로 본 계약이 해지 후 또는 계약기간 종료 후 1년이 지날 때까지 거래처가 보관물품을 찾아 가지 않을 경우 은행은 거래처에 사전통지하고 보관물품을 임의로 꺼내어 따로 보관할 수 있으며, 부득이 처분해야 할 때는 은행의 규정에 의한 공매 등 물품처분방법에 따라 처분하되 보다 유리한 가격이 기대될 때는 은행이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.
- ② 제①항에 따른 비용(해지 또는 계약기간 종료 후 보관비용 포함)은 거래처가 내야 한다.
- ③ 은행은 지점의 위치변경, 폐쇄 등 대여금고 전체를 이동하여야 할 사정이 있는 경우 제13조 3항에 정한 바에 따라 거래처에게 사전에 통지하고 보관물품을 임의로 꺼내어 새로운 대여금고에 보관할 수 있다.

제8조 (보증금 및 수수료)

거래처는 보증금이나 수수료 없이 이용한다. 하지만 거래처의 부주의이나 과실로 인해서 대여금고 시설의 파손(열쇠 분실)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거래처는 수리 및 교체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.

제9조 (거래해지사유)

- ① 은행은 다음에 해당하는 때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 1. 거래처가 해지를 신청한 때
 2. 거래처가 사망한 때
 3. 거래처가 해산 또는 파산한 때
 4. 거래처가 은행의 신용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
 5. 거래처가 본 계약서상의 의무를 위반한 때
 6. 은행 예금평잔 등 거래처의 거래실적이 은행이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할 때
 7. 은행이 대여금고업무를 계속하기 어려운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
- ② 은행이 제①항 4호, 5호, 6호 및 7호의 사유로 이 계약을 해지할 때는 거래처에 서면 또는 전화 등으로 그 사실을 알린다.
- ③ 해지 때 거래처는 이용열쇠를 은행에 돌려주어야 하며 돌려주지 못한 때는 은행에 그 비용을 내야 한다.

제10조 (신고사항의 변경 등)

- ① 대여금고 열쇠 또는 신고인감을 분실, 도난, 손상하거나, 비밀번호를 망각한 경우 및 신고한 사항이 바뀐 때는 곧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.
- ② 거래처가 대여금고 이용열쇠를 분실, 도난, 손상하거나 비밀번호를 망각하여 자물쇠와 열쇠를 바꾼 때 그 비용은 거래처가 부담한다.

제11조 (대여·양도금지 등)

- ① 대여금고의 이용권리는 대여·양도할 수 없다.
- ② 거래처는 거래처가 이용하는 금고에 대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.

제12조 (면책)

- ① 신고인감 또는 서명을 육안으로 주의 깊게 대조하여 틀림없다고 여기고 비밀번호가 일치하여 거래처용 열쇠를 가진 자에게 대여금고를 열어준 때는 어떠한 사고가 발생하여도 은행은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
- ② 천재지변,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해 거래처에 생긴 손해는 은행이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.
- ③ 거래처에 대한 은행의 통지는 본 계약체결 당시 거래처가 은행에 신고한 주소 또는 전화번호로 하면 되며, 거래처가 변경된 주소 또는 전화번호를 은행에 신고하지 아니하여 생긴 손해는 은행이 책임지지 않는다.

제13조 (준용)

이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은행의 예금거래기본약관을 준용한다.